【 별표 6 】

가 점 사 항

(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6조 관련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기 준</th><th>가 점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직무관련
자 격 증</td><td>당해직렬의 당해계급 또는 상위계급 해당 자격증</td><td>0.5점</td><td rowspan="2">*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,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</td></tr>
<tr><td>당해직렬의 바로 하위 계급 해당 자격증</td><td>0.25점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특정
직위
근무
경력</td><td>시·도 등 인사 교류
자체감사담당공무원</td><td>1년을 초과하는 매1월</td><td rowspan="3">월 0.03점</td><td rowspan="6">최대 1점</td></tr>
<tr><td>전문직위</td><td rowspan="2">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 전체기간</td></tr>
<tr><td>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·감찰관련 기관(부서) 파견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3">특수지역 근무경력</td><td>- 가·나 지역</td><td>월 0.04점</td></tr>
<tr><td>- 다 지역</td><td>월 0.03점</td></tr>
<tr><td>- 라 지역</td><td>월 0.02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직무관련 창안상 수상</td><td>1. 중앙제안
- 금상(0.75), 은상(0.5), 동상(0.25), 장려·노력(0.1)
2. 자체제안
- 우수상 이상(0.1)
- 우수상 미만(0.05)</td><td>최대 1점</td><td>- 주 제안자는 만점
- 부 제안자는 배점의 1/2 인정
- 해양수산부와 관련이 없는 제안은 배점의 1/2 인정
-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- 동일건으로 중앙, 자체 중복 가점 불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예산절감 우수직원</td><td>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백만원당 0.025점</td><td>최대 0.5점</td><td>* 백만원 이하는 0.025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업무유공포상</td><td><정부포상>
- 훈·포장 : 0.75점
- 대통령표창 : 0.5점
- 총리표창(모범포함) : 0.25점
- 장관(급) 표창(타부처포함) : 0.1점</td><td>최대 0.75점</td><td>- 담당업무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업무혁신
우수직원</td><td>정부혁신</td><td>행정안전부 주관
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</td><td>0.5점</td><td rowspan="4">최대 1점</td></tr>
<tr><td>규제개혁</td><td>국무조정실 주관
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</td><td>0.5점</td></tr>
<tr><td>적극행정</td><td>중앙인사관장기관 주관
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</td><td>0.5점</td></tr>
<tr><td>민원처리</td><td>행정안전부 주관
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</td><td>0.5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다자녀 양육 공무원</td><td>자녀가 2명인 경우</td><td>0.5점</td><td rowspan="2">최대 1점
(8급 이하 공무원만 해당)</td></tr>
<tr><td>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</td><td>1점</td></tr>
</table>

※ 가점항목별 상한점 범위내에서 동일 항목내 실적은 중복(합산)하여 평정 가능